

교직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

제정 1999. 03. 09.
2차 개정 2015. 01. 06.
3차 개정 2016. 02. 1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50조의3 및 제84조의2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상지학원(이하 '우리학원'이라 한다)에 재직중인 교원 및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이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우리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 및 기관에 재직 중인 교원 및 직원으로 한다.

②제1항의 교원이란 우리학원 정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(조교를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③제1항의 직원이란 우리학원 정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사무직(별정직을 포함한다), 기술직 및 기능직 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지급대상) ①명예퇴직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우리학원의 교원 및 직원으로 임용되어 2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②제1항의 재직기간에는 우리학원내 각급 학교의 재직기간이 포함된다.

제4조(지급대상자의 제한) ①수당지급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휴직, 연구년제 및 6개월 이상 해외파견중인 사람
2.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사람 (개정 2004. 8. 12)
3.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는 사람
4.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사람 (신설 2004. 8. 12)

②각 기관의 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조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지급액의 산정) ①수당의 지급액은 별표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(개정 2016. 2. 17)

②퇴직 당시 월봉급액이라 함은 봉급표상의 기본급에 교원은 연구수당(연구수당보조비포함), 직원은 근무수당(근무수당보조비 포함)을 합한 것을 말한다.

③정년잔여월수는 명예퇴직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지급공고) 각 기관의 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, 인원, 신청기간, 지급방법, 지급일 등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04. 8. 12)

제7조(지급신청)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의한 신청 기간내에 명

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 (개정 2004. 8. 12)

제8조(지급의 심사·결정) ①각 기관의 장은 수당지급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 혹은 직원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②각 인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장기근속자
2. 상위직 해당자

제9조(지급대상자 통지) ①이사장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지급대상자의 사직원 제출) ①제9조에 의하여 수당지급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예퇴직원(별지 제2호 서식)을 임면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교원의 명예퇴직일은 2월말, 8월말로 하며, 직원의 명예퇴직일은 6월말, 12월말로 한다.(개정 2015. 1. 6)

제10조의2(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) 각 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.(신설 2004. 8. 12)

제11조(수당지급) ①각 기관의 장은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수당지급일, 지급방법, 신청서류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(개정2004.8.12)

②수당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승인을 받고 명예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수당의 지급은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.

제12조(수당지급 수령권자) ①수당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②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유족에게 지급한다.

③유족의 범위,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. (개정 2004. 8. 12)

제13조(명예퇴직자에 대한 예우) 명예퇴직자는 정년퇴직일까지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·상지의원의 의료비 및 대학 교육기관의 자녀학비 감면에 대하여 재직중인 교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. (개정 2004. 8. 12)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

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	산 정 기 준	비 고
1년 이상 5년 이하인 자	퇴직당시(정관제5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 월봉금액의 25% × 정년잔여월수	
5년 초과 10년이하인 자	퇴직당시 월봉금액의 25% x (30 + 정년잔여월수의 50%)	
10년초과인 자	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	

※ 비 고 : 위 표에서 월봉금액이라 함은 교원의 경우에는 본봉+연구수당
(연구수당보조비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, 직원의 경우에는 본봉+근무수당
(근무수당보조비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말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

접 수		결 재		
일자			
번호				
성 명	(한 글) (한 자)	주민등록 번호		
소 속		직 위		
주 소				
명예퇴직 예정일		정 년 퇴직일		
최 초 임용일		재직년수	년	개월
수 당 지급액		정년 잔여 월수		
산출 내역			인사부서 확 인	(인)

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
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합니다.

.
 신 청 인 : (인)
 부 서 장 : (인)

기관장 귀하

유의사항

- **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하고 인사부서에서 기재.**
- 인사부서는 각 인사위원회 상정시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원본대조 후 첨부하여야 한다.

※ 결재란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(별지 제2호 서식)

명 예 퇴 직 원

본인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50조의3 또는 제84조의2의 교직원
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년 월 일자로 명예퇴직코자
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년 월 일

소속부서 :

직 급 :

성 명 : (인)